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0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교흥・모경종・허종식

이훈기 • 박선원 • 이용우

노종면 • 유동수 • 정일영

윤상현 · 맹성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 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중구·미추홀구·연 수구·남동구·부평구·옹진군
	인 천	북 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
		부 천	부천시 • 김포시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 천 인 천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김포시
---------	---

	부 천	부천시・김포시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27년 7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7년 6월 30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